
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
2017년도 운영계획서

2017. 01.

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

목 차

I. 운영개요

1. 법적근거	1
2. 운영목적	2
3. 운영목표	2
4. 운영기간	2
5. 운영내용	2
6. 협의체 구성현황	3

II. 세부운영계획

1. 분야별 운영계획	5
2. 소요예산	8

III. 사업별 세부추진계획

사업1. 회의운영	10
사업2.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수립	11
사업3. 워크숍	11
사업4. 분과기획사업	12
사업5. 제4회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	13
사업6. 선진지 견학	14
사업7. 사회복지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	15

구분	주요내용
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분과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연차별 계획 평가 및 분석 ○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
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협의체 회의 ○ 실무협의체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연차별 계획 평가 및 분석 ○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
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분과 회의 ○ 민·관 합동 워크숍 준비
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협의체 회의 ○ 사회복지 지역 특성화사업 공모 ○ 민·관 합동 워크숍
5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협의체 회의 ○ 실무분과 회의 ○ 분과기획사업 공모 ○ 사회복지 지역 특성화사업 선정
6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협의체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2017년 계획 실행과정 ○ 사회복지 지역 특성화사업 시행 ○ 분과기획사업 선정 ○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○ 강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참석
7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분과 회의 ○ 분과기획사업 시행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2017년계획 실행과정, 2018년 연차별계획 ○ 지역대회 준비 -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○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

구분	주요내용
8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협의체 회의 ○ 실무협의체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2018년 연차별 보장계획 검토 ○ 지역대회 준비 -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
9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분과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2017년계획 실행과정, 2018년 연차별 보장계획 수정 ○ 지역대회 시행 - 제4회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
10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협의체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2017년계획 실행과정, 2018년 연차별 보장계획 수정 ○ 전국대회 참석 ○ 실무분과 위원 선진지 견학
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분과 회의 ○ 연차별 보장계획 모니터링 - 2018년 연차별 보장계획 심의 ○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
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협의체 회의 ○ 실무협의체 회의 ○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 ○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년 결과보고회 및 전체위원 간담회

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년도 운영계획서

I

운영개요

1. 법적근거

○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
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·군·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
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 ~ 이하 생략 ~

③ ~ 이하 생략 ~

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
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~7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
제6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,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 ~이하 생략~

제7조(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(이하 "실무협의체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. ~ 이하 생략 ~

○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

2. 운영목적

-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 보장계획수립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 참여복지 구현
-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 기반 마련으로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대응하고, 주민들이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-stop, One-stop으로 제공
-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
-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·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

3. 운영목표

-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심의, 평가 및 건의
- 사회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복지정책의 수립, 모형개발 및 건의
- 지역사회 보건·복지 연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활성화
-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민·관 협력 서비스 체계를 구축
-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역복지 특화모델 등 제시

4. 운영기간

- 2017년 1월 1일 ~ 2017년 12월 31일

5. 운영내용

가. 회의 운영

- 지역사회복지전반에 대한 협의, 심의, 건의
-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별로 회의 운영

나.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계획 심의

- 2017년도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및 2018년 계획 수립 및 심의

다.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

- 협의체 실무분과 위원들의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분과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우수 실무분과 위원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진행
- 협의체 위원 대상으로 인식 제고 및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
- 다각적인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분과기획사업 개최
-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의 홍보 및 복지체험 등을 위한 복지박람회 개최
- 국내 활성화된 협의체 벤치마킹 및 전국대회 참가를 통한 동해시 협의체 발전 방향 제시
- 공공과 민간 복지 간 자원 연계·협력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한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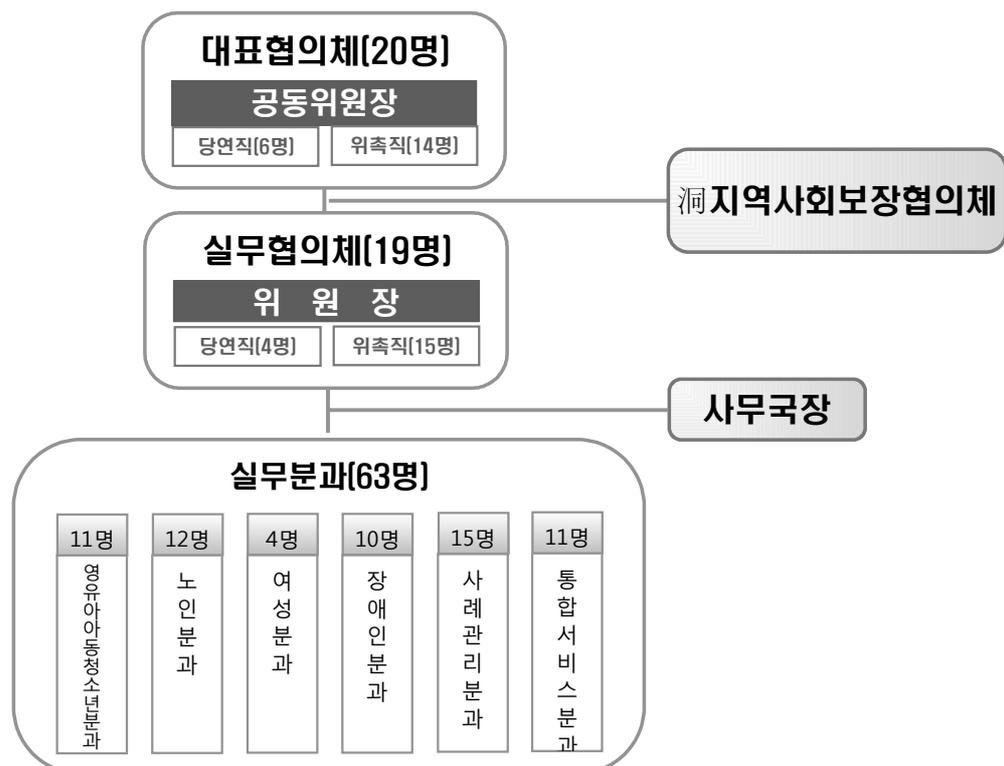
라. 외부추천이사 운영위원회

-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연중수시 공모를 통해 추천 가능한 인력풀 구성

마. 홍보사업

-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안내

6. 협의체 구성현황



가. 대표협의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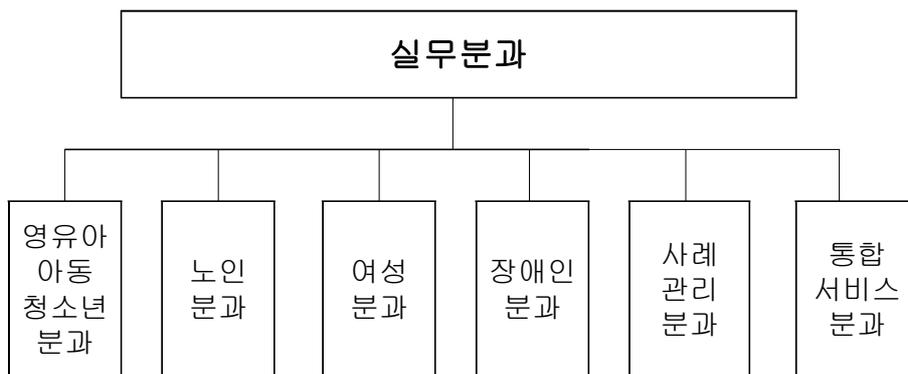
- 공동위원장 : 공공위원장 - 심규언(동해시장)
 민간위원장 - 김경수(동해지역자활센터장)
- 부위원장 : 김호갑(이레마을노인요양원장)
- 위원구성
 - 당연직 : 6명
(시장, 행정지원국장, 복지과장, 가족과장, 보건소장, 실무위원장)
 - 위촉직 : 14명

나. 실무협의체

- 위 원 장 : 서순영 - 월드비전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 팀장
- 부위원장 : 배인주 - 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
- 위원구성
 - 당연직 : 4명(희망복지담당, 경로담당, 보건행정담당, 천곡동 맞춤형복지팀장)
 - 위촉직 : 15명

다. 실무분과

- 각 실무분과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추대



라. 사무국장 : 1명

1. 분야별 운영계획

가. 회의운영

- 대표협의체 회의
 - 회의 개최 : 분기별 1회(연 4회)
 - 회의 내용

예정일	주요안건
2017. 2월	○ 2016년 협의체 결산보고 ○ 2017년 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 ○ 2016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평가 및 심의
2017. 5월	○ 분과기획사업 추진상황 보고 ○ 사회보장 심의
2017. 8월	○ 2017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중간평가 ○ 제4회 동해시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추진상황 보고 ○ 사회보장 심의
2017. 11월	○ 2018년 협의체 운영계획(안) ○ 사회보장 심의

- 실무협의체 회의
 - 회의 개최 : 연 6회
 - 회의 내용

예정일	주요안건
2017. 2월	○ 2016년 협의체 결산보고 ○ 2017년 협의체 운영계획 및 예산 ○ 사회복지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 계획(안)
2017. 4월	○ 분과기획사업 계획(안) ○ 민관합동 워크숍 계획 보고
2017. 6월	○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계획(안) ○ 2017년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계획(안)
2017. 8월	○ 2017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중간평가 ○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추진상황 보고
2017. 10월	○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식 ○ 제4회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추진결과 보고 ○ 2018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(안) ○ 2018년 협의체 운영계획(안)
2017. 12월	○ 2018년 협의체 예산 및 운영계획

- 실무분과 회의
 - 회의 개최 : 연 6회
 - 회의 내용

예정일	주요안건
수시 (홀수 달, 각 분과별 6회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분과별 협의체 사업 논의 ○ 각 분과별 연차별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논의 ○ 분과기획사업 논의 ○ 각 분과별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세부계획 논의 ○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방안 논의 등

나.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

- 각 분과별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
 - ⇒ 실무협의체에서 분석·평가·검토
 - ⇒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확정

다. 협의체 활성화 사업

- 민·관 합동 워크숍
 - 일 정 : 2017년 4월경
 - 횟 수 : 1회
 - 대 상 : 협의체 위원,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, 사회복지시설·기관·단체 종사자
 - 내 용 : 협의체 활성화 및 복지역량강화
- 분과기획사업
 - 계획구상 및 공모 : 2017년 1월 ~ 5월
 -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: 2017년 6월
 - 사업시행 : 6월 이후
 - 내 용 : 다각적인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각 분과특성에 맞는 복지역량강화 및 복지기획사업

○ 제4회 동해시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당

- 일 정 : 2017년 9월경
- 대 상 : 동해시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, 관련공무원, 동해시민
- 내 용 :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상담, 체험부스 운영, 바자회, 지역복지문제 관련 포럼

○ 강원도 워크숍 및 전국대회 참가

- 일 정 : 2017년 6월, 10월
- 대 상 : 협의체 대표위원장, 실무위원장, 분과위원, 담당공무원, 사무국장
- 내 용 :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네트워크 강화 및 비전 공유

○ 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

- 일 정 : 2017년 10월
- 대 상 : 협의체 우수위원
- 내 용 :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참여 동기부여 및 타 시·군 벤치마킹 및 연수

○ 사회복지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

- 계획구상 및 공모 : 2017년 1월 ~ 4월
-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: 2017년 5월
- 사업시행 : 5월 이후
- 내 용 : 공공과 민간 복지 간 자원 연계·협력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

라. 외부추천이사 운영위원회

- 외부추천이사후보자 연중수시 모집을 통해 추천 가능한 인력풀 구성

마. 홍보사업

-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업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현황안내